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성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677

발의연월일: 2025. 3. 6.

발 의 자: 박성훈·김성원·이헌승

이인선 • 고동진 • 최은석

조배숙 · 한지아 · 조은희

박충권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금전, 증권, 동산,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 등 열거된 재산에 한해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별도로 벌칙또한 두고 있음.

그러나 현재 기존 신탁가능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 토큰증권, 담보 권 등의 재산에 대한 신탁의 시장 수요가 높으며 규제샌드박스를 통 해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임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없이 곧바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신탁업자가 신탁가능재산이 아닌 재산을 수탁하여 금융위원회 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았음에도 불구하고,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 우 형벌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제재규정을 합리화하려는 것임(안 제 446조제18호).

법률 제 호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46조제18호 중 "재산을 수탁한 자"를 "재산을 수탁하여 제42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446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	제446조(벌칙)		
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			
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			
의 벌금에 처한다.			
1. ~ 17의3. (생 략)	1. ~ 17의3. (현행과 같음)		
18. 제103조제1항 또는 제4항을	18		
위반하여 <u>재산을 수탁한 자</u>	<u>재산을 수탁하여</u>		
	제42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시		
	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		
	하지 아니한 자		
19. ~ 64. (생 략)	19. ~ 64. (현행과 같음)		